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359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정이유

- 각 기능별로 설치·운용해오던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기금을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기금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을 설치·운용(제1조)
- 기금의 재원은 도의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중앙정부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제2조)
- 기금의 지원사업은 재해구호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 지원으로 함(제3조)
-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용도 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함(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사업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제5조)
-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함(제7조)
- 노인복지지원사업은 노인교육과 취미활동 지원, 노인단체사업의 지원,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등으로 함(제8조)
-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권리증진,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함 (제9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과 기타 수급권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함(제1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중앙정부의 보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구호사업
2. 노인복지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③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노인복지지원사업)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교육과 취미활동 지원
2. 노인단체사업의 지원
3.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 육성
4.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인복지지원사업)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권리증진
2.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3.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4.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금지원사업) ①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2. 기타 수급권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장학생 본인이 타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때

4. 보호자가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⑤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충청북도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불우이웃돕기금고”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2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및 결정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생략)

□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총계주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 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